

2015년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 개인과세 부분

2015. 8. 6.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세법개정안 중 개인과세와 관련된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과세특례 신설

저금리 시대에 종합적 자산관리를 통한 근로자·자영업자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제91조의 18(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을 신설할 예정이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개 정 안
가입대상	- 직전연도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 - 신규취업자 등은 가입연도 소득이 있는 경우 가입허용 - 직전연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
세제지원	- 계좌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통산하고 만기 인출시 - 소득 200만원까지 비과세 - 소득 200만원 초과분 9% 분리과세
납입한도	연 2천만 원
의무가입기간	5년 (의무가입기간 경과전 인출·해지시 감면세액 추징) 3년 : 청년 또는 일정소득 이하 가입자(*) (*) 총급여 2,500만원이하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1,600만원이하 사업자
적용시기	2016. 1. 1.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적용기한	2017. 12. 31.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배당분까지 적용

2. 대주주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강화

소득세법 개정안은 자본소득 과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상장법인 대주주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형평을 위하여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세율을 20%로 단일화 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현 행	개 정 안
■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 유가증권시장 - 지분을 2%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 • 코스닥시장 - 지분을 4% 이상 또는 시가총액 40억원 이상 • 코넥스시장 - 지분을 4%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억원 이상	■ 대주주 범위 확대 • 유가증권시장 - 1%, 25억원 • 코스닥시장 - 2%, 20억원 • 코넥스시장 - (좌동)
■ 주식 양도소득세 세율 • 중소기업 : 10% • 중소기업 외 법인 : 20% • 중소기업 외 법인의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 : 30%	■ 대주주 양도소득세율 단일화 • 중소기업 - 대주주: 20% - 그 외 주주: 10% • (좌동) • (좌동)

동 개정안 중 대주주 양도소득세율 단일화는 2016. 1. 1. 이후, 대주주 범위 확대는 2016. 4. 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3.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제도 보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개정안은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고 개별 예시규정의 과세요건을 정비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증세법 제2조 등)

구 분	개 정 안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근거 명확화	• 다음의 경우에 증여세를 과세함 (i) 무상 또는 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재산을 이전받은 경우 (ii) 증여예시규정 및 증여의제규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iii) 증여예시규정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거나 증여예시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

자산수증이익 등에 법인세가 과세된 법인의 주주·출자자 등에 대한 증여세 과세 범위 규정	• 법인의 자산수증이익과 채무면제이익 등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경우 그 법인의 주주·출자자 등에 대해서는 증여의제로 규정된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 과세 (*) 일감몰아주기, 특수관계법인의 사업기회 제공을 통한 이익의 증여, 결손법인 및 지배주주가 50% 이상을 지배하고 있는 영리법인 등을 통한 증여 등
--	---

동 개정안은 2016. 1. 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4.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상증세법 개정안은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수혜법인 지배주주의 재산가치 증가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개 정 안
사업기회제공 방법	• 시행령으로 규정
과세대상	•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 (*)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 비율(간접보유비율 포함)이 50% 이상인 법인
증여의제이익	• 수혜법인의 3년간 영업이익(*)에 지배주주 등의 지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법인세 이중과세 조정 (*) 사업기회 제공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수혜법인 이익 (1년 환산) × 사업기회 제공기간(3년)
과세방식	• 증여의제이익을 일시 과세하되, 3년 후 실제 손익을 반영하여 증여세 재계산
증여의제시기	• 사업기회를 제공받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말

동 개정안은 2016.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사업기회를 제공받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상기의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 | | |
|---------------|------------------|-----------------------------|
| ● 조 준 파트너변호사 | TEL. 02 316 4213 | E-Mail. ccho@shinkim.com |
| ● 정인화 선임공인회계사 | TEL. 02 316 4219 | E-Mail. ihchung@shinkim.com |
-

Chambers Asia-Pacific Awards 2014
South Korea Law Firm of the Year : Shin & Kim



SHIN&KIM
법무법인 세종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s regular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

<http://www.shinkim.com>